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지역 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중간지원조직 구성
- 나.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출연기관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 (2) 대표자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장세용
- (3) 소재지 :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층 사무실
- (4) 출연금액 : 금8억원
- (5)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민법」 제32조
 -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주요 사업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재편사업

- 연중 다품목 생산-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구축
-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개편 및 농업생산 지속을 위한 생산 농가 교육 등 각종 사업 추진

(2)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 직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고령농, 중소농, 영세농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체계를 마련
-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시장의 요구와 먹거리 다양성을 확보하여 농민의 부가가치를 증대

(3) 학교급식·공공급식 활성화

- 공급·물류·배송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먹거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구미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의 고품질화 및 안전성 확보

다. 출연의 필요성

(1) 구미시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추진 기반 및 동력확보

- 구미푸드플랜은 먹거리와 관계된 농식품의 공급과 지역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하므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한 재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인 관리·운영 필요

(2)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 직매장,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 재단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고정수입 보장

**(3)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주민
복지 증진**

-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4) 지역 식품가공산업 육성, 공공급식 확대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공공급식 확대로 생산-
가공-유통-소비 순환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부가가치 제고

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1. 3. : 재단법인 초대 임원(이사, 감사) 구성 완료
 - ※ 이사회 구성 : 7명(이사장, 센터장, 이사 3, 감사 2)
- '21. 4. : 재단법인 발기인총회
 - '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정관 및 내부규정 등 심의·의결
- '21. 7. : 재단법인 주무관청(경북도) 설립 허가 및 등기 완료
- '21. 8. : 재단법인 경력직 직원 채용(4명)
 - '21. 10. 5. 재단법인 직원 근로개시
- '21. 10월중 :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예정
- '21. 10월이후 : 농가조직화 구축 및 직매장 1호점(금오산점) 개장 준비

마. 출연금 내역(2022년)

(1) 출연 예산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재)구미떡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계	300,000	800,000	500,000	
	인 건 비	157,955	479,221	321,266	
	운 영 비	42,045	164,469	122,424	
	사 업 비	-	156,310	156,310	
	기본재산 (출연금)	100,000	-	△100,000	

(2) 2022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300,000	800,000	500,000	
인건비 소계	157,955	479,221	321,266	
인건비	157,955	479,221	321,266	정직원(5), 임용예정(2) 직매장 기간제(5)
운영비 소계	42,045	164,469	122,424	
일반운영비	33,545	119,869	86,324	
여비	6,500	17,800	11,300	
업무추진비	2,000	4,800	2,800	
자산취득비	-	22,000	22,000	
사업비 소계	-	156,310	156,310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 직매장 행사 개최 (개장식, 김장행사 등)	-	30,000	30,000	
↳ 농산물 안전성 검사	-	50,000	50,000	
↳ 포장재 지원	-	40,000	40,000	
↳ 출하관리 및 생산체계 구축	-	9,310	9,310	
↳ 도농상생 농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	5,000	5,000	
재단법인 경영평가 용역	-	22,000	22,000	
기본재산 소계	100,000	-	△100,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3) 「민법」 제32조
- (4)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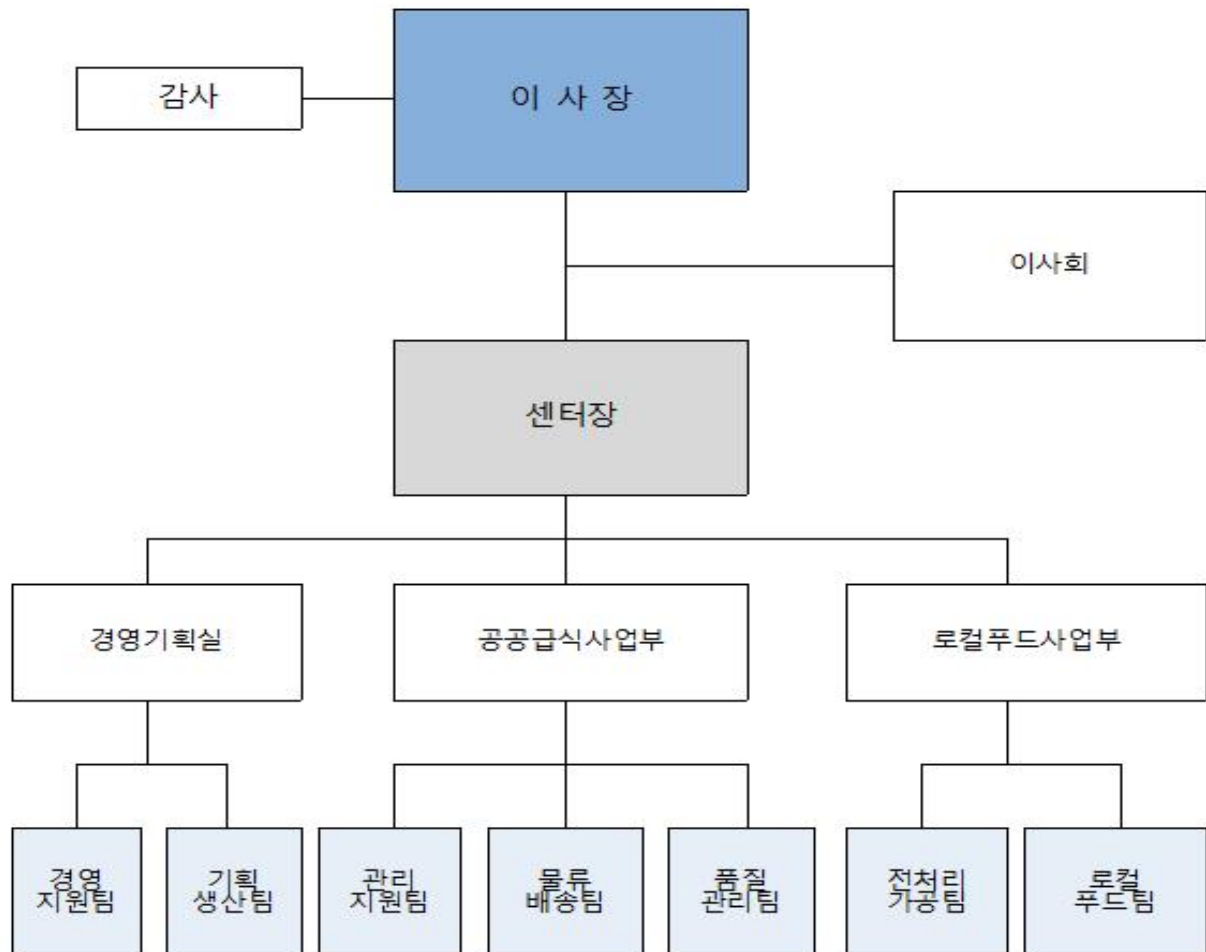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최종 조직구성 및 업무
분장(붙임)

[붙임]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최종 조직 구성〉



구 분	총 계	센터장	직 원					기타
			소계	1실 2부장	팀 장	대 리	사 원	
인 원	50	1	49	3	7	10	29	

※ 직위 및 직급 : 센터장(5급), 실장 및 부장(6급), 팀장(7급), 팀원(8~9급)

〈업무 분장〉

구 분	분 장 사 무
이사장	- 재단법인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
센터장(1)	-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부문 실무총괄
경영기획실장 (1)	- 센터 운영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 현안 조사, 분석, 대책 수립 - 센터 실무 및 시설관리 총괄
공공급식사업부장(1)	- 급식사업부 사업관리 - 관리지원, 물류배송, 품질관리 실무 관리
로컬푸드사업부장(1)	- 상품화 과정 사업관리 - 전처리 가공, 로컬푸드사업 실무 관리
경영지원팀 (3)	- 센터 운영 및 자산관리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관리 - 지출·계약 등 회계업무 - 예산회계·직원복무 등 - 급식센터 인증 및 계약, 행정 사무 등 -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획생산팀 (4)	- 기획생산 농가 조직화 - 생산관리 - 안정성 관리
관리지원팀 (6)	- 학교 및 공공기관 수주·발주 관리 - 공공영역 홍보 및 관리 - 통합 전산시스템 관리 - 가공품 수주·발주 관리 - 공공영역 기타 사업 관리 - 급식센터 시설 및 위생관리
물류배송팀 (10)	- 통합전산시스템 관리 - 수주·발주 관리 - 식재료 품질기준 표준화 - 식재료 단가조사 - 원물 발주 및 수집관리 - 클레임 관리 - 통합물류 및 배송인력 관리 - 식재료 배송 및 순회수집 - 차량관리 및 점검
품질관리팀 (9)	- 식재료품질 검수 - 농산물 소분·소포장
전처리가공팀 (8)	- 학교급식 농산물 전처리 - 가공식품 농산물 전처리 - 농산물 가공
로컬푸드팀 (6)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
기 타	- 신규업무는 센터장이 연관 주무부서로 사무분장 수행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유통특작과
입 안 자	과 장	정 인 철
	담 당	최 재 용
	담 당 자	김 주 성 (480-5922)